

# 「타행자동이체」약관

#### 제1조 약관의 적용

타행 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거래처'라 합니다)와 KB 국민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 2 조 신청, 변경 및 해지

- ① 거래처가 타행 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행 자동이체(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타행 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금일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 제 3 조 타행 자동이체 방법

은행은 거래처의 타행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 수표, 지급청구서 제출 등 별도 청구 없이 출금 계좌에서 이체금액을 인출하여 수취인 거래 금융기관(이하'입금은행'이라 합니다)의 지정계좌(이하'입금계좌'라 합니다)로 입금합니다.

# 제 4 조 입금가능 예금종목

입금계좌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 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거래처는 입금 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 5조 출금 및 입금

- ① 은행은 거래처 출금계좌에서 지정일(거래처가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출금하여 지정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 ②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출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 6조 거래불능 및 면책

출금계좌의 인출가능 예금잔액이 이체금액과 이체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부족 할 경우(미결제타점권 (자기앞수표 포함)은 인출가능금액에서 제외) 또는 기타 거래처 귀책사유(수취계좌 부재,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 지급제한, 해지 등)로 출금 또는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 처리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거래처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 7 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

- ① 타행자동이체 출금금액은 지정일 은행 영업시간 이내에 현금화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됩니다.
- ② 출금계좌에서 같은 날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



금 우선순위는 은행에서 정한 <별첨> 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제 8 조 입금 불능시의 처리

- ① 입금계좌 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해당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 ② 입금계좌의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SMS 등과 같은 전자적매체로 통지하며, 은행은 타행자동이체를 임의 해지합니다.

## 제 9조 수수료

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 이체금액 출금 시 수수료를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 제 10 조 계좌이동서비스

- ① 타행자동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u>www.payinfo.or.kr</u>)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 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③ 거래처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 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거래처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 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하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

#### 제 11조 약관의 변경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약관의 변경 조항을 따릅니다.

#### 제 12 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타행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7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 [별첨]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는 2018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11조 약관의 변경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시행일) 제7조 약관의 변경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별첨] 자동이체 출금우선순위

1. 영업개시전 : 정기예금 이자지급

2. 영업시간중 : 타행자동이체, 대출이자, 신탁, 요구불이체, 선일자 등

영업점 직접처리분

3. 영업시간후 : 다음 그룹 순서에 의해 처리되며, 그룹내 처리 순서는 없음.

-1그룹: 대출이자, KB 카드대금, 영업점 개별 처리건(APT 관리비 등)

- 2 그룹 : 대외청구자금(VAN, CMS, GIRO 등)

- 3 그룹 : 기타 수신 계좌이체, 적립식 예금이체(신탁포함), 요구불간 이체 등

※ 납부자자동이체 :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